

뉴욕시 인권법: 고용주의 사업상 의무

뉴욕시 인권 위원회는 뉴욕시 사업체가 포용적인 고용주가 되어 뉴욕시 인권법(NYC Human Rights Law, NYCHRL)을 준수하게 돕는 자원입니다. 이 문서에는 고용주가 NYCHRL에 따라 가지는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. 이는 많은 사례에서 주 및 연방법보다 범위가 넓습니다.

고용주가 알아야 하는 것: NYCHRL은 차별을 금지합니다

-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직원, 인턴, 구직자, 독립 계약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나이, 구속 또는 유죄 판결 기록, 간병인 신분, 피부색, 신용 기록, 장애 여부, 젠더, 성 정체성, 이민자 신분, 혼인 또는 파트너 여부, 군 복무, 출신 국가, 임신 여부, 인종, 종교/신념, 급여 내역, 성적 및 생식적 건강 관련 결정, 성적 지향, 가정 폭력,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 신분, 실직 상태, 몸무게 및 신장(2023년 11월 22일에 시작)
- NYCHRL의 조항 대부분이 직원 네 명 이상 또는 가사 노동자 한 명 이상을 둔 직장에 적용됩니다. 모든 직장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.
- 풀타임, 파트타임 직원뿐 아니라 인턴(유급 또는 무급)이 보호됩니다.

NYCHRL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:*

권리와 보호책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실제 또는 인지된 차별 보호 카테고리에 따라 채용 시, 근무 중, 계약 종료 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됩니다.

- 서면 [성희롱 보호책 설명](#)을 제공하고 직장에 [법적 고지](#)를 영어와 스페인어(모든 고용주에게 해당)로 게시하며 직원에게 매년 [성희롱에 관한 교육](#)을 시켜야 합니다(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고용주에게 해당).
- [임산부 편의 보장 알림](#)을 게시해야 합니다(직원 4명 이상 또는 가사 노동자 1명 이상을 둔 고용주에게 해당).
- [수유 정책](#) 및 적절한 수유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. 직원은 깨끗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수도 시설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수유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위원회의 [권리 알림](#)을 게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
일자리 광고에 [급여 범위](#)를 포함해야 합니다. 고용주는 일자리를 광고하는 시점에 제공할 예정인 최소 및 최대 급여를 나타내야 합니다.

포용적 채용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

- 채용 과정에서 [급여 내역](#) 또는 [신용 기록](#)에 관해 물으면 안 됩니다(해당 질문은 항상 금지됩니다).
- [범죄 경력](#)(대부분의 일자리는 조건부 제안에 앞서 해당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)에 관해 묻거나 NYCHRL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과거 유죄 판결에 기반하여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됩니다. Positions supervising or caring for children.

직원에게 합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. 이는 사업체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 스케줄이나 업무 변경 또는 개인이 필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물리적 개조나 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

- 합당한 편의는 다음과 같은 보호 항목에 요구됩니다.
 - 장애, 임신, 출산이나 관련 의료상의 문제, 종교 의식, 가정 폭력,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 신분, 수유

집행:

- NYCHRL에 따른 의무가 있는 고용주는 해당 법과 인권 위원회의 규칙 및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. 위원회는 고용주가 해당 법에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반드시 위원회의 서신과 권고서에 응답해야 합니다.
- 고용주가 인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최대 \$250,000의 민사 처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. 위원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기타 해결책을 평가할 수도 있으며, 침해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지역사회 봉사 등의 기타 해결책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.

뉴욕시 인권 위원회 연락 방법:

- 전화: (212) 416-0197.
- 온라인: NYC.gov/HumanRights에서 누구든지 차별을 신고하고, 익명의 조언을 남기고, 인권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해 배우거나 무료 워크숍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**시 인권법에 관한 법적 고지, 자료표, FAQ는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:*

<https://www1.nyc.gov/site/cchr/media/publications.page>

주 및 연방법도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합니다.